광고매체 공급기업 모집 안내서

-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-

2020. 8.

행정안전부

한국지방재정공제회
한국옥외광고센터

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요강

□ 사업배경

○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**옥외광고 산업 진흥** 및 **도시미관**을 개선하고, **지역경제 활성화**를 위한 중소기업 및 지자체 광고지원

□ 사업개요

○ (사 업 명) 「**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**」

○ (지원대상) 중소기업, 시군구(제주·세종 포함), 옥외광고사업자

※ 중소기업(제품홍보 등), 시군구(특산물, 관광지, 축제 등)

○ (지원매체) 공고일 기준, **광고미게첨 상업광고물**(타사광고물)*

* 건물·토지·시설물·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

① 옥상광고, ② 벽면광고, ③ 교통수단(버스·택시)광고, ④ 교통시설(철도역, 도시철도역, 버스터미널, 공항 등)광고, ⑤ 공공시설(버스승강장·택시승강장 등)광고, ⑥ 지주이용광고

○ (지원내용) 광고매체(패키지 포함) 1건당 1개월 기준, 1천만원 이내(최장 3개월)

- 매체별 지원비율은 공급기업이 제출한 매체별 제안가, 세금계산서 등을 종합 분석하여 별도 공지

※ 일부 광고매체의 경우 건당 1개월 기준 500만원 이내(최장 3개월)

※ 광고매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

※ 지원금액은 제작비·매체비·설치비 등 광고게첨에 필요한 모든 소요예산을 포함

○ (선정방식) **지원매체 확정 후, 시군구 공모**

- 지원매체 확정(행안부, 센터) 후, 시군구 대상 공모를 실시하되, 시군구는 광고주(소요비용 포함)를 모집하여 신청서 제출
- 신청서 심사 후 지원대상 시군구를 확정(매체·광고주 매칭)하고, 매칭 결과에 따라 예산 교부 및 시군구별 사업 시행

구분	광고매체	광고주
자격기준	옥외광고업등록사업자	중소기업, 시군구(제주, 세종 포함)
선정기준	• 제출서류 검토 후 등록	• 지역기준(매체·광고주 동일지역 우선 선정 등) • 매체유형 및 광고사업자(대·중소기업) 안배, 목적·파급효과, 우수중소기업 등 고려
제출서류	• 광고매체 등록 신청서 • 옥외광고사업자등록증 • 미게첨 증빙서류 등	• 광고지원 신청서 • 중소기업확인서 등(중소기업에 한함) • 기타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등

○ (사업절차) 지원매체 공모·확정(9월), 시군구 공모 및 확정(9~10월), 예산지원(12월), 광고시행 및 증빙제출('21.1~6월), 정산 등(7월)

※ 지자체(광고주)가 상업광고를 활용할 경우, 정부광고법령에 따라 절차 진행

1단계 (미게첨광고물 매체·확정) — **2단계**

① 지원매체 공모 (행안부, 센터)	② 지원매체 확정 (행안부·센터)	③ 시군구 공모 (행안부·센터→시군구) * 시도경유	④ 광고주 모집 (시군구)
광고사업자(매체사) 대상 광고미게첨 간판 공모	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매체 확정	지원매체 대상 희망 시군구 모집 * 지원비율 및 최대한도 안내	시군구별로 광고주(중소기업, 해당 시군구) 모집
'20년 8월	'20년 9월	'20년 9월	'20년 9~10월

(시군구 공모) — **3단계 (심사·매칭)** — **4단계 (광고집행 및 정산)**

⑤ 공모서 제출 (시군구→행안부·센터) * 시도경유	⑥ 시군구 확정 및 재정지원 등(행안부·센터)	⑦ 광고 시행 (시군구, 광고주 등)	⑧ 정산 및 결과 보고(시군구)
광고신청서 제출 (소요비용 포함)	지원 시군구(매체·광고주 매칭) 및 금액 확정 대상지역 예산 교부 매체사·광고주 간 계약	매체·광고주 간 매칭 내역에 따라 광고시행 (광고시기 등 확정)	증빙자료 검증, 광고주에게 비용 지급, 결과보고
'20년 10월	'20년 10~12월	'21년 1~6월	'21년 7월

구분	주요역할
행정안전부 (주무부처)	· 광고지원 사업 총괄 · 광고지원 기본계획 수립
한국옥외광고센터 (관리기관)	· 광고매체 공급기업 Pool 모집 및 매체 등록 · 사업관리(계약확인, 이행점검, 결과평가) 및 예산지원
시군구 (수행기관)	· 광고주 공모 및 신청 · 세부 집행계획 수립 · 매체-광고주 광고게첨 확인 및 예산 지출
매체공급기업 (옥외광고매체사)	· 지원사업 대상 옥외광고매체 등록 신청 · 광고주의 의뢰에 따라 옥외광고 서비스 제공
광고주 (중소기업/시군구)	· 지원대상 매체 선택 및 광고비 지원 신청 · 신청내용에 따라 광고매체 광고 의뢰 * 시군구는 정부광고법에 따라 사업 진행

목 차

Ⅰ. 모집 개요 ····· 1

1. 사업목적 ····· 1
2. 모집 광고매체 및 지원사항 ····· 1
3. 모집기간 및 사업절차 ····· 2

Ⅱ. 등록자격 및 방법 ····· 3

1. 기업등록 자격 ····· 3
2. 등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····· 4

Ⅲ. 광고매체 등록기준 및 절차 ····· 5

1. 등록 신청 기준 ····· 5
2. 선정 및 등록 절차 ····· 5

Ⅳ. 문의사항 및 발표 일정 ····· 6

1. 접수 및 문의사항 ····· 6
2. 공급기업 및 광고매체 발표 일정 ····· 6

Ⅴ.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····· 6

1. 유의사항 ····· 6
2. 참고사항 ····· 7

Ⅵ. 제출서류 ····· 9

※ 각종서식

Ⅰ 모집 개요

1 사업목적

○ 광고미게첨 상업광고물을 이용하여 광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,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옥외광고 시장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

2 모집 광고매체 및 지원사항

○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, 광고미게첨 상업(타사)광고물 중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(광고물의 분류)에 규정된 광고물에 한함

> ① 옥상광고, ② 벽면광고, ③ 교통수단(버스·택시 등)광고, ④ 교통시설(철도역, 도시철도역, 버스터미널, 공항 등)광고, ⑤ 공공시설(버스승강장·택시승강장 등)광고, ⑥ 지주이용광고

※ 옥외광고물법령상 규정(대상)되어 있지 아니한 광고물(옥내광고물 등) 또는 유동광고물(현수막, 입간판, 벽보, 전단)은 지원매체 대상에서 제외

○ 등록매체의 수량 : 등록을 신청하는 광고매체의 상품 수는 제한 없음

※ 광고매체 제출 시 수량제한은 없으나, 향후 매체와 광고주 매칭 시 대기업의 매체는 5건 이내, 그외 기업의 매체는 10건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, 특정기업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정기업 수를 조정할 수 있음

○ **등록매체의 광고물 모집단위 : 아나로그 광고물은 1기**(면수 관계없음), **디지털 광고물은 광고물당 1구좌를 원칙으로 함**

- 다만, 광고판매 특성상 교통수단광고, 공공시설광고, 교통시설광고의 경우 동일 종류의 차량 또는 광고물 여러대를 하나의 광고상품(패키지)으로 구성 가능

※ 교통수단일 경우 광고매체 및 광고서비스 정보에 모든 차량의 번호를 기재해야 하며, 동일 차량이 복수의 광고상품에 중복 포함 불가

< 광고매체 상품구성 예시 >

- (예시1) 2면의 광고면을 가진 옥외광고 1기
- (예시2) 시내버스 5대로 구성된 교통수단광고 패키지
- (예시3) 버스승강장(쉘터) 3기로 구성된 공공시설광고 패키지
- (예시4) 지하철역(강남역) 기둥광고 5기로 구성된 교통시설광고 패키지

○ 지원기간 : 신청광고물은 월 단위로 설정하여 제출(최장 3개월)

○ 지원한도 : 광고매체(패키지 포함) 1건당 1개월 기준, 1천만원 이내(최장 3개월)

※ 광고물 1기당 단가가 20만원 이하인 광고물(택시 등)을 패키지로 구성할 경우, 1건당 1개월 기준 500만원 이내(최장 3개월)의 모집단위로 제출해야 함

※ 광고매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

※ 지원금액은 제작비·매체비·설치비 등 광고게첨에 필요한 모든 소요예산을 포함

○ 매체별 지원비율 : 공급기업이 제출한 매체별 제안가, 세금계산서 등을 종합 분석하여 매체별 지원비율 별도 공지

< 지원비율 예시 >

- **(예시1)** 월 2천만원 옥상광고 1기를 3개월간 진행할 경우 총 광고비는 6천만원이며, 지원비율 50% 적용 시 3천만원 지원 가능(나머지 3천만원 및 부가세는 광고주 자부담)
- **(예시2)** 월 300만원의 버스외부광고 패키지를 2개월간 진행할 경우 총 광고비는 600만원이며, 지원비율 70% 적용 시 420만원 지원(나머지 180만원 및 부가세는 광고주 자부담)

3 모집기간 및 사업절차

○ 모집기간 : 2020년 8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(13일)

구분	내용
❶ 기업 모집공고	·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 공지
❷ 공급기업 접수	·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 內 신청사이트(www.ooh.or.kr/media) 접수 ·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업로드하여 등록
❸ 기업요건 심사 및 지원비율 결정	· 광고물 및 사업체의 적격성 등 검토 · 매체별 지원비율 결정(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)
❹ 공급기업 및 지원매체 공개	· 본 사업의 지원매체로 등록된 사업체 및 매체정보 공개 · 광고주 모집 시 광고주 참고자료로 제공

Ⅱ 등록자격 및 방법

1 기업등록 자격

○ **광고매체 공급기업 참여 자격(아래 조건 모두 충족)**

- 공고일('20.8.17) 기준, 옥외광고물법 제11조에 따라 시·군·구에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사업체

  ※ 광고매체 공급기업이 공공기관(국가·지자체·공기업 등)일 경우 등록 제외

-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재 중이거나 국세·지방세 체납기업,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기업, 휴·폐업 중인 기업은 제외

○ **광고매체 등록 요건(아래 조건 모두 충족)**

- 공고일 기준, 광고미게첨 옥외광고물*로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제30조에 따라 해당 시·군·구 또는 시·도에 표시설치 허가(협의)를 득한 합법적 광고물**

  * 공고일 기준 미판매 상태인 광고물로, 광고매체 공급기업(매체사)은 광고매체 등록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추후 제출 자료의 검증 등을 통해 허위(위조)로 판명 시 광고매체 공급기업이 등록한 모든 광고매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
  **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중 시설 내부에 설치된 광고물인 경우,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에 따라 그 시설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광고물에 한함

- 광고매체 공급기업이 원청사로서, 직접 소유하거나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영업권을 가진 광고매체에 한해 등록 가능

  * 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매체를 허가한 시·군·구로부터 확인 예정이며, 교통시설 내부 광고물인 경우 해당 관리청(철도공사, 공항공사 등)으로부터 확인 예정임

※ 원청사라 하더라도 직접 소유하거나 직접 영업할 수 있는 광고매체에 한해서만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, 판매 대행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음

2 등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○ 한국옥외광고센터(www.ooh.or.kr)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광고매체 공급기업 신청서 등을 작성·저장하고 관련 제출서류를 업로드

○ 제출 서류 (온라인 양식 작성 및 첨부파일로 업로드)

구분	신청서류
광고매체 공급기업 (매체사) 관련 서류	- 광고매체 공급기업 신청서 1부 - 청렴이행/변경사항 통보 서약서 1부 - 공급기업 정보수집, 이용, 제공, 조회동의서 - 옥외광고사업등록증(사본) 및 사업자등록증(사본) 각 1부 -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* 확인서 제출이 일정상 어려울 경우,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증빙서류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- 국세·지방세, 4대보험 완납증명서(제출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확인 필수)
광고매체 관련 서류	- 신청 광고매체 리스트 및 매체 정보 1부(서식3 참조) -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증(시군구 등 발행) 1부 - 광고미게첨 상태 및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1부 ※ 광고미게첨 증빙 및 제출서류 (아래 방식 중 택1) - (방식1) 공고일(8.17)부터 등록마감일(9.1) 기간 내에 광고미게첨 상태임을 증명하는 현장사진(촬영 날짜가 사진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휴대전화, 당일 신문 등을 포함하여 한 이미지로 촬영) - (방식2) 기존 광고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착 비용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미게첨 상태가 아닐 경우, 미판매 상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아래 서류 3종 모두 제출 ① 직전 계약서 사본(광고주 계약담당자 연락처 포함) ② 직전 계약에 따른 해당 광고주 게첨보고서(광고내용 포함) ③ 현재 광고물 현장사진(직전 계약 광고내용과 동일해야 함) * 디지털(전광판)광고물인 경우 광고완판 상태 및 미게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송출표 필수 포함 * 위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최대한 증명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면 추후 심의를 통해 미판매 여부 확정 예정 - 광고매체 실거래 가격 등 거래증빙* 1부 * 거래증빙은 세금계산서, 계약서 등 과거 거래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최근 3년이내 2건 이상)를 제출하며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, 공표가격 또는 유사상품 가격표 또는 원가 기반 가격산정 자료 등 제출 - 광고매체의 직접 소유 또는 직접 영업권 증빙* 1부 * 소유일 경우 땅·건물의 소유 또는 임대계약서, 영업권일 경우 시설관리청(도시철도공사, 코레일, 공항공사 등)과의 계약서 등

Ⅲ 광고매체 등록기준 및 절차

1 등록 신청 기준

○ **공급기업 및 광고매체의 심사기준을 충족한 사업체만 매체 등록**

※ 특정 공급기업이 과도하게 광고매체 등록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기업 당 최대 광고매체 조정 가능

구분	적격성 기준
공급기업	· 옥외광고사업등록 여부 확인 · 광고매체의 보유 및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할 것 · 참여제한 조건 검토 (부정당사업체, 휴업·폐업인 기업, 세금체납 기업) ※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향후 기업신용평가등급 및 채무불이행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할 수 있음
광고매체	· 옥외광고 표시설치 허가 여부(옥외광고물법 제3조) · 광고매체 소유 및 원청사 확인 · 광고미게첨 상태 확인 · 가격정책 검증(가격 적정성, 실거래 증빙 등) ※ 필요시 가격 적정성 검증을 위해 제안가 조정협의 가능

2 선정 및 등록 절차

○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공급기업 및 매체 적격성 검토를 진행한 후 요건을 갖춘 사업체 및 광고매체 선정·등록

< 공급기업 및 지원매체 등록·선정 절차 >

공급기업 신청	▶	적격성 검토	▶	공급기업 선정	▶	지원매체 등록
광고매체 공급 신청서 제출		공급기업 및 광고매체 적격성 검토		공급기업 풀(pool) 등록		공급기업이 제공하는 광고매체 등록

Ⅳ 접수 및 문의사항

1 접수 및 문의사항

○ 접 수 처 :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 (www.ooh.or.kr)

○ 문의사항

- 한국옥외광고센터 산업진흥실 (02-3274-2831~3)
-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옥외광고팀 (044-205-3544, 3533)

2 공급기업 및 광고매체 발표일정

○ 공급기업 및 지원 광고매체 등록 결과, 매체별 지원비율은 9월 중 한국옥외광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

Ⅴ 기타 사항

1 유의사항

○ 공고내용의 미숙지, 제출자료 누락, 기입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으며, 신청서 제출 후 원칙적 수정 불가

○ 금번 공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서 제출된 정보 및 서류 중 일부는 광고지원을 요청하는 광고주 모집 시 공개* 예정

* 광고물 위치, 규격, 제안가격 등(다만, 세금계산서, 계약서 등은 광고주에게 비공개)

○ 제출하는 신청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증빙서류를 위조했을 경우 광고매체 공급기업 등록·지정을 취소하며,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체가 부담

○ 제출한 증빙자료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

○ 작성된 신청서 내용이 허위사실이 있거나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○ 선정된 공급기업은 제출서류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또는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·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해당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급기업 지정 취소 가능

2 참고사항

○ 공급기업(광고매체)와 광고주 간 매칭

- 공급기업이 등록한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주(중소기업·시군구)와의 매칭은 행안부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립한 매칭 원칙에 따라 진행
- 광고매체와 광고주 매칭은 지역광고 활성화를 위해 1순위 매칭을 우선 지원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2순위, 3순위 지원 가능

· (1순위) 광고매체 위치와 광고주 소재지가 동일한 시·군·구일 경우
· (2순위) 광고매체 위치와 광고주 소재지가 동일한 시·도일 경우
· (3순위) 광고매체 위치와 광고주 소재지가 시·도 지역 밖일 경우

- 1순위 매칭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광고매체에 복수의 광고주가 광고지원을 신청할 경우 광고주 제출 신청서 등을 심사하여 1개 광고주 선정
- 특정 광고매체에 편중되거나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고매체에 따라 최소·최대 매칭 비율을 설정할 수 있으며, 특정 광고매체에 광고신청이 적을 경우 매칭 순위와 관계없이 조정 가능
- 우수 중소기업 광고주 등 우선매칭 가능

○ 공급기업 제공 정보의 공개 등

- 공급기업으로 지정 시 제출한 광고매체 정보(제안가격, 위치, 규격 등), 공급기업 정보 등은 광고주 모집 시 광고주에게 공개

※ 광고주는 공개된 공급기업의 광고매체 정보, 공급기업의 정보를 확인하여 자사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광고매체 및 서비스를 신청 예정

- 공급기업은 광고주의 요청사항을 충분히 파악·협의하고 광고매체 및 광고서비스의 가격, 조건 등을 제시하여 광고주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

  ※ 매칭 이후 광고주와 광고매체 공급기업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거나 서로 요구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취소 가능

○ 광고매체 계약 및 광고게첨 기간

- 광고매체와 광고주 매칭 이후 광고주는 공급기업과 충분히 협의하여 지원받을 광고매체 및 광고서비스 내역, 거래 조건 등이 포함된 계약서(표준계약서 서식1 참조)를 작성하여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제출

  ※ 광고계약 금액은 당초 매체사가 제시한 제안가를 준수하여야 함

- 광고주와 광고매체 공급기업은 협의된 계약서(광고집행 일자, 기간, 공급가격 등 포함)를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협의된 기간 동안 광고 게첨

- 광고주가 요구하는 광고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공급기업이 자유로이 일반적인 타 광고주를 유치하여 광고영업 가능

  ※ 단, 공급기업은 본 사업을 통해 매칭된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을 우선시 하여야 함

○ 광고주의 광고매체 지원 제한

- 광고매체는 하나의 광고주와의 매칭을 원칙으로 하며, 다수의 광고주가 신청할 경우 광고주 선정 심의를 통해서 1개 광고주 매칭

- 광고주가 선택하지 아니하여 매칭이 불가한 광고매체는 별도의 임의 매칭하지 않으므로 지원이 불가

○ 광고비 지원

- 광고비 지원은 해당 시·군·구를 통해 광고주에게 지급되며, 지급시기는 시군구의 예산집행 일정에 따라 시군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Ⅵ 제출 서류

< 제출서류 >

[기업 관련 증빙서류] ※ 온라인 제출

1. 옥외광고사업등록증 사본(시군구 발행)
2. 사업자등록증 사본(국세청 발행)
3. 국세·지방세, 4대보험 완납증명서
4.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(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한함)

*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,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증빙서류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다른 증빙서류 제출

[광고매체 관련 증빙서류] ※ 온라인 제출

1.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(시군구 등 발행) 사본
2. 광고미게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

* 광고물 현장 사진, 송출표 등

3. 광고매체 실거래 가격 등 거래 증빙자료*

* 거래증빙은 세금계산서, 계약서 등 거래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며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, 공표가격 또는 유사상품 가격표 또는 원가 기반 가격산정 자료 제출

4. 광고매체의 직접 소유 또는 직접 영업권 증빙자료*

* 소유일 경우 토지·건물의 소유 및 임대계약서, 영업권일 경우 시설관리청(도시철도공사, 코레일, 인천국제공항공사 등)과의 계약서 등

[서식]

1. 광고 표준계약서 * 광고주 매칭 후 매체사·광고주 계약시 활용

서식1 **광고 표준계약서 양식**

옥외광고 표준계약서		계약번호 제 호
계약서	발주처	
	계 약 상 대 자	· 상호 또는 법인명 · 사업자등록번호 · 주소 · 전화번호 · 대표자
계약내용	광고용역명	
	계약금액	금 원정(₩)
	계약보증금	금 원정(₩)
	지연배상금률	%
	계약기간	. . . ~ . . .
	광고집행내역 (광고위치, 수량 등)	
	그 밖의 사항	

발주처(광고주)와 계약상대자(광고매체사)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,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붙임서류 : 1. 과업내용서 1부
2. 산출내역서 1부

2020. . .

자치단체의 장 또는
계약담당자 (인)
계약상대자 (인)